

 校訓 착실한 행동 기술의 연마	학교발전기금 유의사항 가정통신문	제 2025-118 호 발행처 : 경성전자고등학교 발행일 : 2025. 09. 26.
☎ 49209 부산광역시 서구 꽃마을로 25 (서대신동 3가) 홈페이지 : http://kse.hs.kr ☎ 교무실: 253-2450~3 FAX: 714-7444 ☎ 행정실: 253-2454 FAX: 255-0472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의 계절을 맞이하여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자녀교육을 위해 학교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항상 교육발전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학교발전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발전기금 조성명의: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발전기금 조성시기: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이후
- 학교발전기금 유의사항
 - 발전기금을 조성할 때에는 지역주민, 동창회, 독지가, 기업체,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 조성은 가급적 지양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은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업이나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사업 등 학부모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성하여야 함.
 - 학교운영위원회가 아닌 학부모 단체에서 일정 기부액을 할당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요구·유도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 아래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로 제보
-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금지**
 - 불법찬조금 조성 원인
 - 찬조금을 부족한 학교 예산을 보충하는 수단(교직원)으로 인식하거나, 교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학부모)로 소액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관행으로 여기는 인식이 여전히 잔존
 - 불법찬조금이 소액이고, 집단적으로 모금·사용되는 점에서 발전기금으로 접수·집행하지 않는 것이 부패행위라는 인식 결여
 - 학교발전기금 모금·사용에 대한 제한 및 행정절차로 인하여 학교발전기금 조성 기피 현상 초래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 (교육청 홈페이지) 민원 또는 열린광장 > 신문고 또는 신고센터
-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한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2025. 9. 26.

경성전자고등학교장

직·간접
신고센터